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9
----------	-----

2015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 6.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5. 6. 17.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5. 7. 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6,420,003,000	5,600,387,260	375,122,060	444,493,680	

·지출내역: 학교보건관리 등 10개 사업, 총 66건

Ⅲ. 검토보고(전문위원 : 엄지운)

-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중 예비비 관련 조항이 신설된 바 예비비 결산결과에 대해 별도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¹⁾
-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14년 10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²⁾를 제정한 바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금번 정례회중 의결 받고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것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³⁾ 및 「지방재정법」 제43조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
- 예비비의 산정은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⁵⁾에서 예산액의

-
- 1) 「지방재정법」 제43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2]- 예비비(예산액의 0.1% 이상)

0.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500만원이며, 67건, 64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6억원을 지출하였음

〈표 6-1〉 예비비 지출 현황('14~'12)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액	2014	2013	2012
건 수	67	106	11
예산액	7,905	9,988	41,872
지출결정액(A)	6,420	6,037	21,963
지출액(B)	5,600	4,663	18,434
다음연도이월액(C)	375	946	0
집행잔액 (A-B-C)	444	428	3,529

○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소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지방교육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5억 8,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 8,600만원 전액을 실제 지출하였음

- 지방 교육채 상환사업에 대한 201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검토하면, '09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액 87억 8,400만원만 반영하고 '13 학교신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6-2〉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방채 발행액	본예산	비 고
'09 교육여건개선	253,632	8,784	
'13 학교신설	131,082	-	미편성

-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재원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이 납부기한인 9월 10일까지 편성되지 못하였고, 이자 미납시 지체이율이 가산되어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예비비로 지출결정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방교육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 이므로 한정적인 재원이라 하더라도 확정 가능한 부분은 예비비의 당초 편성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이자 상환액은 본예산 편성 시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를 통한 지출은 지양되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 총무과 소관 **선거관리 비용**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⁶⁾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선거관련 공통경비로 부담하는 경비로 14억 5,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5,000만원을 실제 지출하였음
- 선거관리 경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⁷⁾(249억 1,500만원)의 경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통보('13. 8. 5.)를 받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공통경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13. 11. 4.)되었으나, 서울시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계획안 송부⁸⁾가 이보다 늦게 통보(2013. 11. 5.)되어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표 6-3〉 선거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치단체집행 공통경비	선관위 위탁금
선거비용	25,306	1,350	23,956

6) 「공직선거법」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및 보전경비

8) 자치단체집행 공통경비 통보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계획안 송부(서울시 행정과-27381(2013.11.5.))

- 따라서, 향후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하여 확정되어 있는 선거에 대한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될 필요가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뿐만 아니라 공통경비도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자치단체집행 공통경비의 분담 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⁹⁾」에 따라 현재 시:자치구: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1/3씩 분담하고 있으나,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된 7개의 선거¹⁰⁾ 중에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선거에만 관련되므로 공통경비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시설 등의 제작·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선거 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서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10) 제6회 동시지방선거 : 교육감, 시장, 구청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 총무과 소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¹¹⁾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¹²⁾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로 1억 3,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700만원을 실제 지출하였음

-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법」 과 「같은법 시행령」 이 '13년 4월과 6월에 각각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¹³⁾가 '14년 5월 8일에 제정된 바 있음.

11)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본조신설 2013.4.5.]

-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본조신설 2013.6.28.]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3)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5.8.] 제5조(지원 등)

-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최초로 신설된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14년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및 그 밖에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사무실 비품, 차량, 여비 등을 1차('14. 6. 11.)로 1억 1,200만원을 우선 지출결정하고, 다시 집행상황 및 소요액을 재추산한 후 2차('14. 7. 3)로 2,200만원을 지출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예비비 지출사례는 예측 곤란한 예비비 지출 건에 해당되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지출결정액(1억 3,400만원)중 실제 집행은 8,700만원(64.9%)에 불과하여 4,700만원(35.1%)이 불용된 바,
-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례가 없고, 단기간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사업부서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하여 예비비 불용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 예비비 지출결정건 중 1억원 이상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6-4〉 예비비 지출 내역(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순	배정기관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지출 결정일	불용사유
합 계			4,069	3,695	186	189		
1	교육 재정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1,586	1,586	0	0	8.14.	
2	총무과	선거관리비용	1,456	1,350	0	106	5.22.	집행잔액
3	체육건강 청소년과	영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19	319	0	0	11.24.	
4	성북교육 지원청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200	11	186	3	7.15.	펜싱장 증축 공사 완료후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5	행정관리 담당관	소송비용 부담	173	157	0	16	10.21.	원고가 12월말까지 소송비용 미청구 하여 미집행
6	남부교육 지원청	대림중 교문이전공사	113	103	0	10	7.15.	집행잔액
7	총무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112	70	0	42	6.11.	집행잔액
8	서부교육 지원청	서강초 암반사면 보강 공사	110	99	0	11	7.31.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5건, 3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⁴⁾」에 따르면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예규로써 명시하고 있어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예비비로 긴급히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기정예산을 집행 하듯이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를 지양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입법취지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임

〈표 6-5〉 예비비 중 이월액 발생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지출결정일	이월사유	소관
합 계	558	175	375	8			
둔촌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설계비	17	13	1	3	4. 23.	지연배상금 부과로 인한 준공지연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둔촌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277	149	128	0	7. 17.	지연배상금 부과로 인한 준공지연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200	11	186	3	7. 17.	펜싱장 증축공사 완료후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사 기간 부족	성북교육 지원청
봉현초 옥탑보수 공사	54	2	51	1	9. 18.	동절기 공사 전면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계측관리용역	10	0	9	1	5. 9.	유아교육진흥원교육동 계측관리용역으로 2015. 5. 28.준공 (사업기간 1년)	교육시설 관리사업소

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59 예비비의 지출제한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③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토론요지 : 없음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519
----------	------------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6,420,003,000	5,600,387,260	375,122,060	444,493,680	

·지출내역: 학교보건관리 등 10개 사업, 총 66건